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225 강간치상(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 일부 예비적 죄명 준강간치상), 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 고 인 정■■ (■■■■-■■■■), ■■■■■■■■■■■ 노회장
주거 충남 금산군 ■■■■■■■■■■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

검 사 이시전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익우, 김한용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이연량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함귀용

판 결 선 고 2008.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장■■■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성경에 대한 재해석론을 전개한 '30개론' 등을 기본 교리로 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1986년에는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라는 종교단체[세칭 ■■■■(■■■■■■■■■■)]를 조직하여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산하 조직인 '■■■■■■■■■■'를 '■■■■■■■■■■'으로 개편하고, 1989. 12.경에는 '■■■■■■■■■■'으로, 1996년에는 '■■■■■■■■■■'으로, 1999. 10.경에는 '■■■■■■■■■■'로 각 개칭하여 종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은 위 종교단체의 교주 또는 총재로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여 왔고, ■■■■의 일부 신도들은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어 왔다.

그러던 중 ■■■■ 등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과문'이라는 제하에 피고인의 성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되고,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피고인

은 2001. 3. 16.경부터 2008. 2. 20.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다.

1. 피해자 김■■■, 김■■■에 대한 각 준강간의 점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김■■■(■세)과 피해자 김■■■은 각각 1998년경 및 2000년경 ■■■■■■■■■■ 교단에 들어가 30개론 교육을 이수하였고, 피고인을 메시아로 알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2. 11.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홍콩으로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행선지를 알리지 말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속이고 2003. 2. 15.경 홍콩으로 가서 ■■■■■■■■■■ 신도들의 안내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16. 10:30경 피고인과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홍콩 ■■■■■■■■■■ 아파트 ■■■■■■■■■■로 피해자들을 불러 그날 23:00경까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본 후, 위 아파트 방안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좌우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김■■■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김■■■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츠리며 거부하자 김■■■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침대에 나란히 눕힌 다음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양 손가락을 동시에 집어넣어 휘젓고, 김■■■의 몸 위에 올라타 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김■■■과 김■■■을 간음할 당시 피해자들은 ■■■■■■■■■■ ■■■■의 신도로서 피고인을 종교적 메시아로 믿어 왔고,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명

확히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낯선 이국 홍콩으로 왔으며, 그곳에 피고인과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밖에 없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3. 2. 17. 정오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신도들이 거주하던 방에서 피해자 김■■■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03. 2. 18. 10:3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거실에서 피해자 김■■■을 가리키며 "저 보지가 미스코리아감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의 점

피해자 김■■■은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8. 5.경 ■■■■■■■■■■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9. 27. 30개론 교육을 수료한 후 약 7년간 전도와 강의 등 ■■■■■■■■■■ 종교활동에만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피해자는 ■■■■■■■■■■ 교단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른 여자 신도 4명, 남자 신도 9명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위 교단 신도들이 거주하는 안산시로 갔다.

피해자를 비롯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은 2006. 4. 2.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4. 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김■■■을 피고인의 숙소 목욕탕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틀어진 샤워기 앞부분을 떼어낸 호스를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확장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김■■■, 김■■■, 정■■■, 이■■■, 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재외국민 납치의심 사건발생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및 출입국현황서 편철)에 각 첨부된 각 결정문 또는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김■■■, 김■■■에 대한 각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김■■■, 김■■■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를 반대하는 단체인 '■■■■■' 회원들의 사주에 의해 허위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가사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 김■■■, 김■■■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들은 쌍둥이 자매로서 피해자 김■■■은 1998. 7.경, 피해자 김■■■은 2000. 10.경 각 ■■■■■■■■■■ 교단에 들어가 30개론 교육을 수료한 후, 김■■■은 30개론의 강사로 활동하고, 피해자 김■■■은 치어리더 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을 메시아라고 믿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02. 7. 21.경 피해자 김■■■에게 전화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오던 중 2003. 2. 11.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홍콩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2003. 2. 15. ■■■■■■■■■■ 신도들이 마련해 준 항공편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홍콩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홍콩으로 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프랑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03. 2. 15. 홍콩에 도착하여 ■■■■■■■■■■의 신도인 김■■■의 안내로 홍콩 소재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03. 2. 16. 1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홍콩 ■■■■■ 아파트 ■■■■■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 및 그곳에 있는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시각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신도들과 개별면담을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라) 그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신도들인 허■, 이■■이 피고인의 양 옆에서, 피해자들은 바닥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마를 받은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허■과 이■■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피곤하니 팔, 다리를 주물러 주면 면담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잠시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양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눕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서 거리낌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위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은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김■■이 옆으로 움직이자 손을 뺀 후,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김■■의 몸 위로 올라가 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때 김■■은 울면서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성기를 빼면서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김■■과 김■■을 빼앗아가려고 했다."는 말을 하였다.

바) 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인 김■■을 간음하는 것으로 보고

올다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눈의 렌즈가 빠졌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렌즈를 찾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질에 염증이 있는지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들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김■■■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그만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안 아플거야. 아프면 소리질러도 돼."라고 말하면서 김■■■의 몸 위로 올라가 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해자 김■■■, 김■■■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들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태도나 모습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로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2. 7. 21.경 이후 피해자들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홍콩으로 오게 한 사실,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안마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양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눕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중국 공안의 협박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수감 중 고문을 받으면서 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는 허위 진술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할 당시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거의 모두 시인하는 내용이어야지 위와 같이 일부만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허위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김■■■, 우■■■, 허■■은 모두 피해일 무렵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그들은 피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현재 ■■■■■■■■■■의 열성 신도들로서 위 선교회의 총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이나 법정 진술태도나 모습 등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래전의 일이라 사람의 기억의 한계상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 ■■■■■■■■■■를 반대하는 단체인 '■■■■■'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피해자들이 간음을 당한 후 바닷가 산책을 나가 찍은 동영상 장면에서 그다지 심각한 표정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인정된다.

3) 준강간죄의 성부

형법 제299조에 정해진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 3257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이유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앞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은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

국민 홍콩에 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순간에조차 피해자 김■■■은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김■■■은 "아파요." 정도의 말 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둘이 같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점 외에,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피고인을 신봉하는 소수의 신도들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서 성적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 피해 당시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기며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해 오던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가 일어난 장소와 주변상황 등으로 인하여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이상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잠자고 있던 피해자 김■■■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 김■■■을 불러 갑자기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김■■■, 김■■■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2. 17. 정오경 홍콩 ■■■■■ 아파트 ■■■■■의 신도들이 거주하던 방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2003. 2. 18. 10:30경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피해자 김■■■을 가리키며 "저 보지가 미스코리아감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일치는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그러한 사소한 불일치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김■■■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행위는 그러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로서 위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김■■■을 포함한 여자 태권도부 신도들을 자신의 거주지인 중국 안산시 명상산장에서 만나 예배와 예술제를 한 후 신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기도 와 상담을 해주었을 뿐 피해자 김■■■을 간음한 사실은 없고, 가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 김■■■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8. 5.경 ■■■■■■■■■■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9. 27. 30개론 교육을 수료한 후 약 7년간 전도와 강의, 태권도부 활동 등 ■■■■■■■■■■ 종교활동에만 종사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어 왔다.

나) 피해자는 ■■■■■■■■■■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른 신도들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위 교단 신도들이 거주하는 안산시로 가서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 일행과 함께 2006. 4. 2.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6. 4. 2.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에서 예배, 예술제, 면담 등의 행사를 마친 후 김■■■, 장■■■ 등 태권도부 5명과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김■■■가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를 깨워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려간 후 자신은 밖으로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06. 4. 3. 04:00경 여러 개의 문을 지나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야, 팬티 벗어.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다시 "야, 팬티 벗어."라고 소리 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틀어진 샤워기 앞부분을 떼어낸 호스를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마)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확장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해자는 2006. 4. 3. 아침 장■■■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후 장■■■과 함께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다른 신도들이 등산을 간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여권이 있는 건물로 간 후 짐을 챙겨 중국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는 위 공항에서 다음 날 09:00경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산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강간당했다. 살려 달라."고 말하며 만일 위 항공권의 일정대로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꼭 와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사) 피해자는 위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조선족 동포들이 구해준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06. 4. 4. 위 공항으로 갔는데, 김■■■ 등 ■■■■■■■■■■■ 신도들이 나타나 피해자와 장■■■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중국 공안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와 위 신도들을 데려가 조사를 하였다. 피해자와 장■■■은 2006. 4. 6.까지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06. 4. 7. 09:00경 항공편으로 국내로 귀국하였다.

2) 피해자 김■■■ 진술의 신빙성 유무

위와 같이 피해자 김■■■이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적이나 기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모습 등에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샤워기 앞부분을 떼어낸 호스로 김■■■에게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고, 여자는 밀이 깨끗해야 하니 잘 닦으라고 하면서 등에 비누까지 칠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71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

하는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중국 공안의 협박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수감 중 고문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할 당시에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거의 모두 시인하는 내용이어야지 위와 같이 일부만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벗어나는 날 찍힌 동영상에 피해자의 웃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하나, 이는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보인 모습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한편, 장■■■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장■■■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도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 이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에 비추어 장■■■의 이러한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게다가 장■■■은 자신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고소취소장을 수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 ■■■■■■■■

■■■를 반대하는 단체인 '■■■■■' 회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초부터 '■■■■■' 회원들과 공모하여 젊은 미혼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과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이 피해내용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 공안 작성의 김■■■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중국 공안이 '그럼 손가락만 들어간거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는 통역과정에서 의사전달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탓으로도 볼 수 있어, 위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간음행위는 가해남성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도 결국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인정된다.

3) 강간죄의 성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상태에서 낯선 이국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목욕탕 안에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야, 팬티 벗어."라고 소리 쳐 옷을 벗게 하고, 몸을 움츠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빼라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뜨거운 물이 틀어진 샤워기 앞부분을 떼어낸 호스를 피고인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보지를 찢어서라도 한다."라고 소리친 것 등은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해자가 태권도 유단자이고 피고인이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6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젊은 여자 신도들을 강간하는 등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

신적 상처를 위로해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 신도들 수명을 성폭행한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김■■■에 대한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통일교 원리강론 교리를 요약·인용하여 성경에 대한 재해석론을 전개한 '30개론' 등을 기본 교리로 하여 포교활동을 하다가, 1986년에는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라는 종교단체[세칭 ■■■(■■■■■■■■■■)]를 조직하여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산하 조직인 '■■■■■■■■■■'를 '■■■■■■■■■■'으로 개편하고, 1989. 12.경에는 '■■■■■■■■■■'으로, 1996년에는 '■■■■■■■■■■'으로, 1999. 10.경에는 '■■■■■■■■■■'로 각 개칭하여 종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은 위 종교단체의 교주 또는 총재로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여 왔다.

위 '30개론'은 주로 통일교 원리를 요약·인용한 것으로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예수님이 현실의 이 땅위에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재림하며, 그 재림예수가 피고인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암시함으로써 위 교단의 신도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의 면전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예수이고,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으며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스스로 예수라고 칭하였다.

또한, 위 ■■■■ 간부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그의 생가인 충남 금산군 ■■■■ 본부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메시아인 정■■■ 선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된 행위이고 하늘의 생명책에도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은혜'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선생님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라고 사전에 주입시키는 한편, 피고인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당한 듯이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인에게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 1. 6. ■■■■에서 탈퇴한 황■■■이 ■■■■의 다른 신도들에 의하여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 등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과문'이라는 제하에 피고인의 성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신도들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추종자들과 함께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음해하고 있으니 절대로 믿지 말라.", "방송을 보면 무기한 금식에 처한다.", "피고인의 비리를 폭로한 인터넷 사이트(www.■■■■.or.kr)에 들어가

글을 읽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라고 겁을 주면서 신도들의 절대적 복종을 강화해 왔다.

한편,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01. 3. 16. 외국으로 도피하였고, 피고인의 외국 은신처에서도 피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이 항상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면서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하여 국내 ■■■ 신도들에게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어린 여신도들에게 피고인은 재림예수로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는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킨 후 외국은신처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김■■■(여, ■■세)는 대학생이던 2000. 6.경 친구의 소개로 ■■■■ 교단에 들어가 2001. 7. 4.경 30개론 과정을 수료하고 세례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변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등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8. 22.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리조트에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1주일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교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1. 8. 30. 19:00경 자신과 추종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리조트 내 숙소로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있던 여자 신도인 장■■■, 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위 리조트 방 안에서 먼저 면담을 하던 다른 여자 신도에게 신체검사 결과 암에 걸렸다고 고지하여 그 여자 신도가 오열하면서 방을 나오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의학적 장비 없이 암도 진단할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를 위 장■■■ 등 다른 여자 신도 3명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동시에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에도 복종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장■■■, 문■■■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신체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욕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고 겁을 준 후 옷을 벗게 하고, 꼭지를 제거한 샤워기 노즐과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함께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다량의 물을 주입시키고, 피해자의 몸과 자궁에 암과 물혹 등이 있는지 검사해 주겠다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브래지어를 벗기고 젓가슴을 주무르고, 침을 바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흔들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에도 복종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한 후 질 세척과 암과 물혹 검사를 한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1. 8. 22.경 말레이시아 ■■■■■에 도착하여 리조트에 머무르던 중 2001. 8. 30. 귀국하기 전에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하여 피고인이 머무르는 숙소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데려간 언니들이 피해자에게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함)이 의학박사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면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은 의학박사 자격증도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검사를 해주니 너희들에게도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검사가 시작되었으며, 질 세척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과정에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공소사실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질 세척 및 암과 물혹 검사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진료유사행위라고 오인하고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가, 나)항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김■■■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의 신도로서 피고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속을 구원할 종교적 메시아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출국하여 낯선 이국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맹신하는 추종자들에 의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0. 6.경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에 가입한 이후 ■■■■■■■■■■■■의 주요 교리인

30개론을 배우고 신도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실, 피해자는 2001. 8. 21.경 ■■■■■■■■■■의 세계문화교류행사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에 도착하여 200명 이상의 신도들과 지내다가 2001. 8. 30. 귀국을 앞두고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해 피고인이 머무르는 숙소에 가게 된 사실, 위 면담 당시 약 20명의 신도들이 피고인과의 면담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장■■■, 문■■■, 박■■■와 한 팀이 되어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라식 수술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피고인은 질 세척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차례로 자신의 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꼭지를 제거한 샤워기 노즐을 피해자 일행의 음부에 넣어 다량의 물을 주입하였는데, 피해자는 세 번째로 욕실에 들어갔고, 당시 욕실의 문이 열려 있어 앞서 들어간 일행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었던 사실, 욕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은 몸과 자궁에 암과 물혹 등이 있는지 검사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을 차례로 침대에 눕도록 한 후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그 후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사인을 받고 귀국을 위하여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버스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레이시아로 가기 이전에 이미 ■■■■■■■■■■의 신도들로부터 피고인이 의학박사라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피고인의 몸을 통해 기뻐하신다.'라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성상납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진료유사행위로 오신한 나머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주변

상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의 총재로서 그 신도인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료행위를 병자한 위계로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검사는 제2 예비적 공소사실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도 결국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김■■■, 김■■■에 대한 각 강간(주위적 공소사실)의 점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항은 위 무죄부분 1. 가. 1). 가)항의 기재와 같다.

2)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김■■■(여, ■■■세)과 피해자 김■■■은 각각 1998년경과 2001년경 ■■■■ 교단에 들어가 30개론 교육을 수료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신도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등의 신변에 큰 위해가 가해진다는 교육을 받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2. 11.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비밀리에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는 홍콩으로 오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 행선지를 알리지 말라고 철저히 교

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속이고 2003. 2. 15.경 낮선 홍콩으로 가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신도에 이끌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16. 10:30경 피고인과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홍콩 ■■■ 아파트 ■■■로 이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 의하여 세뇌된 피해자들을 불러 그날 23:00경까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방안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좌우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김■■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김■■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츠리며 거부하자 김■■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김■■의 온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 김■■을 강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은 김■■이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리자 김■■을 욕실로 데려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회 쭈시다가 방으로 데리고 온 후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침대에 나란히 눕힌 다음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양 손가락을 동시에 집어넣어 휘젓고, 이에 김■■이 아프다가 울면서 저항하자 김■■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김■■의 온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리면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 김■■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협박의 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2003. 2. 16. 10:30경 피고인과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홍콩 [REDACTED] 아파트 [REDACTED]로 이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 의하여 세뇌된 피해자들을 불러 그날 23:00경까지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을 맹종하는 신도들을 항상 곁에 두는 등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큰 해악을 받게 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가 협박의 내용을 구성할 수는 없고,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폭행의 태양으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김■■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김■■의 온몸을 누르고, 그녀의 다리를 강제로 벌렸다."는 것과, "피고인이 김■■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김■■의 온몸을 누르고, 그녀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 위

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보일 뿐, 그에 더 나아가 그것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해자들이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김■■■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의 법정진술, 김■■■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10쪽 내지 2-12쪽)의 영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소장에는 "처녀막이 파열되고 질 내부가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제 처녀막과 질 내부가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고, 음부에 샤워기를 넣고 물을 넣어서 배에 공기가 가득차 부어 올라서 치료중이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차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검찰 진술조서에는 "중국 ■■■부근 호텔에서 당시 피해상황을 남겨두기 위해 피고

인이 제 질을 통해 물을 삽입하여 제 배가 불룩해진 모습, 질이 파열이 되고, 질의 출혈로 인해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장면을 장■■■에게 촬영토록 했으며, 설사를 하루 평균 20여 회 정도 3개월 가량 했고, 한 달 반 정도를 질이 아파 걸어다니지 못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한 것 외에 달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입원까지 한 사실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하겠으며, 경찰병원 진단서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증인의 머리끝까지 물이 튀어 나올 것처럼 아팠고, 배가 불룩해져서 그 안에 물이 가득차서 공기방울 소리가 났고, 나중에 증인이 팬티를 보니 하혈을 한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사진은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배가 불룩 나온 모습 등이다.

2) 그런데 증인 송■■■, 김■■■의 각 법정진술,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 대한의사협회장의 2008. 6. 27.자 사실조회회신 및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김■■■에 관한 부분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1)항 증거들 중 피해자 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2006. 4. 3. 04:00부터 06:00까지 사이)로부터 5일 후인 2006. 4. 8. 14:00경에 피해자가 진료받은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자궁검사에서 자궁경부, 질 외음부, 처녀막 등에 상처 등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송■■■는 만일 상처가 있었다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

신 중 김■■■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만일 다량의 출혈을 일으키는 피해를 입었다면 5일 후에 아무런 흔적 없이 질내 파열상이 치료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는 질을 통해 물이 삽입되어 배가 불룩해졌다고 진술하나,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김■■■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질을 통하여 샤워기로 물을 삽입하는 경우 극히 소량의 물이 복부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대한 의사협회장의 2008. 6. 27.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질을 통하여 물을 삽입하는 경우 물이 자궁이나 복부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며, 한편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설사 증세와 급성 위장염 (AGE, Acute Gastroenteritis)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김■■■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설사와 장염으로 인해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과장하기 위하여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입원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사는 그 진단서를 이 사건의 증거로 신청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진단서가 증거로 신청·제출된 바 없는바, 만일 병원에서 피해자 주장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러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해를 당한 건물(■■■■)을 떠난 후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피해자는 그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즉시 바로 출혈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

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통역을 담당하였던 김■■■는 통역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피가 생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경찰병원장의 2008. 5. 19. 자 사실조회회신 중 김■■■에 관한 부분 및 그에 첨부된 처방전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진료받은 날(2006. 4. 8.) 이후인 2006. 4. 10. 질내 파열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처녀막 7시 방향에 0.5cm 크기의 피멍을 동반한 열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나, 위 열상에 관한 부분은 정상적인 진료기록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처방전의 여백에 수기로 써넣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처녀막 열상을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사실조회회신을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잘 살펴보아도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내 파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치상의 점)

1)항은 무죄부분의 1. 가. 1). 가)항의 기재와 같다.

2) 피해자 장■■■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 11.경 ■■■ 교단에 들어가 같은 해 12. 28.경 30개론 교육을 수료한 후 ■■■ 교단 군산지부에서 생활하며 ■■■ 교단을 홍보하는 응원단으로 활동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 신도들에게 피고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피고인의 뜻을 어기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등의 신변에 큰 위해가 가해진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고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여 오던 중, ■■■ 교단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태권도 시범을 보일 다른 여자신도 4명, 남자 신도 9명과 함께 2006. 3. 29.경 피고인과 그 추종자들이 거주하는 중국 ■■■로 갔다.

3) 피해자를 비롯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은 2006. 4. 2.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숙소에는 여러 마리의 개를 거느린 경호원들이 상시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게 어떠한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숙소 지하 목욕탕으로 태권도 시범단인 장■■■, 이■■■와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분위기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등에게 모두 옷을 벗도록 지시하여, 마치 이에 불응

하면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등이 옷을 벗자 위 3명의 음부에 손가락을 차례로 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성기를 이■■■와 장■■■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3명의 질 세척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물이 틀어진 샤워기의 앞부분을 때어낸 호스를 잡고 자신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출혈상, 불안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준강간치상의 점)

1), 2)항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1), 2)항 기재와 같다.

3) 피해자를 비롯한 태권도 시범단이 2006. 3. 31.경까지 그곳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인 후 여자 시범단은 2006. 4. 2.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여러 마리의 개를 거느린 경호원들이 위 숙소를 상시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게 어떠한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6. 4. 2.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숙소 지하 목욕탕으로 태권도 시범단인 장■■■, 이■■■와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분위기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등에게 모두 옷을 벗도록 지시하여 위 3명의 음부에 손가락을 차례로 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성기를 이■■■와 장■■■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3명의 질 세척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물이 틀어진 샤워기의 앞부분을 때어낸 호스를 잡고 자신의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출혈상, 불안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림예수로 믿고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의심을 할 경우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철저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중국으로 온 상황으로 가족들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행선지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장소는 인가가 드문 곳에 있는 5개동으로 이루어진 대형건물로서 예배당은 물론 사우나와 수영장까지 갖추어져 있고, 여러 마리의 개를 거느린 경호원들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장■■의 질내 파열상, 불안신경증 등이 피고인의 강간행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와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13, 14쪽)의 영상이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강간을 당할 시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이 생겼고, 납치를 모면한 직후 중국 공안을 대동하고 중국 ■■■ 소재 상호불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질에서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 출혈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호텔에서 김■■■이 팬티 사진을 찍어두었다.", "위 사건 이후로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어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증인 송■■■, 김■■■의 각 법정진술,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장■■■과 김■■■ 연명의 고소장 및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장■■■에 관한 부분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1) 항 증거들 중 피해자 장■■■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질내 파열상, 불안신경증 등이 피고인의 강간행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피해자와 김■■■ 연명의 고소장에 김■■■의 피해내용은 강간행위와 함께 상해부분도 언급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와 관련된 피해내용은 강간행위만이 언급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당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사우나에서 성폭행 당할 때 좌측 젖꼭지를 정■■■이 물어서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36쪽). ② 피해자 사진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생겼다는 허리부위 타박상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검찰에서 자신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하여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35쪽),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가 생길도록 할 정도의 피고인의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태권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진상의 상처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2006. 4. 2. 16:00부터 21:00까지 사이)로부터 약 5일 후인 2006. 4. 8. 14:00경에 피해자가 진료받은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자궁검사에서 자궁경부, 질 외음부 등에 상처 등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송■■■는 만일 상처가 있었다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장■■■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만일 다량의 출혈을 일으키는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 5일 후에도 상처의 일부가 보인다는 것이다. ④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일시는 중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2006. 4. 4. 18:30경부터 21:00경 무렵이라는 것인데, 경찰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찰병원 진료당일인 2006. 4. 8.이 피해자의 당시 마지막 생리일이고, 생리기간이 7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병원장의 2008. 5. 19.자 사실조회회신 중 장■■■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강간을 당한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갑자기 출혈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2006. 4. 4. 피해자의 질에서 발생한 출혈은 생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피해자의 사진 중 피묻은 팬티(수사기록 2-14쪽)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질내 출혈상을 입은 것으로 볼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항상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어 ■■■■■■

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경찰 수사단계 까지 상해피해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며, 피해부위 사진도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질내 파열상, 불안신경증 등이 피고인의 강간행위 또는 준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렇다면, 앞서 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을 강간치상죄 또는 준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장■■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명의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_____

 판사 장두봉 _____

 판사 류지현 _____